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(사기)(인정된 죄명 사기)



[부산지방법원 2012. 11. 15. 2012고단8100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정영은, 이병석, 김진혁(기소), 박성민(공판)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조충영 외 2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을 징역 8년에,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, 피고인 3, 4(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)를 징역 2년 6월에, 피고인 5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.

다만, 피고인 5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5에 대하여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압수물(증 제1 내지 10, 13 내지 37호)을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